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80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정동만·송언석·엄태영

진종오 · 김형동 · 김선교

박형수 · 김태호 · 김종양

김상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·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의 근거가 된 「공직선거법」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(2018헌마456 등 병합)에 따라 「주민등록법」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

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 현행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가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'인터넷 실명제'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

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(안 제35조제1호)

나.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 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(안 제35조제4호) 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제목 "(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)"을 "(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"를 "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"로, "필요한"을 "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. 이때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2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35조(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 제35조(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)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이)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. 1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인터 <삭 제> 넷 언론사·정당 또는 후보자 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 시판 ·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 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.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2.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하여 -----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 필요한 경우 하는 ----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5호 <신 설> 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

필요한 경우. 이 때 진위 확인

 이 필요한 경우는 제29조제2

 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

 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

 또는 등・초본의 교부를 신청

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